

안산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

| | |
|----------|------|
| 의안 번호 | 1108 |
|----------|------|

제안년월일 : 2002. 12. 7.
제 안 자 : 경제·사회위원장

□ 제안경위

- 12월 5일 김기완의원외 1인이 발의한 안산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경제·사회위원회에 접수되어 12월 6일 제2차 경제·사회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 하였으며,
- 12월 7일 제3차 경제·사회위원회에 다시 상정 심사, 의결하여 동 조례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함.

□ 제안이유

- 그동안 청정연료의 보급확대를 위해 지원하던 본 조례가 보급율이 85%에 이를 때까지만 시행토록한 경과규정에 따라 폐지되는 것은 보급율에 대한 지역적(농촌동, 신도시등)인 균형문제에 대하여 형평성에 어긋나므로,
- 보급률을 높게 조정하여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관내 도시가스 수용가구에 대하여 안정적·지속적인 도시가스 공급을 추진하고자 함.

□ 주 요 골 자

- 현재 85퍼센트의 보급률을 95퍼센트 까지로 그 기간을 연장함
(안 부칙 제3항)

안산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

안산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부칙 제3항중 “85%”를 “95%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|---|
| <p>부 칙</p> <p>①~②(생략)</p> <p>③(시행기간)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내 도시가스 보급률이 85%에 달할 때까지 시행한다.</p> | <p>부 칙</p> <p>①~②(원안과 같음)</p> <p>③(시행기간)</p> <p>.....95%</p> <p>.....</p> |